

건 축 과

주 요 사 업

1.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
2.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
3.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
4.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
5. 「재개발·재건축사업」 주민 궁금증 해소 행정서비스

신 규 사 업

1. 공동주택 내 무인택배함 설치
2. 민원편익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

주요사업

1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

- ◇ 공동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제공
 - ◇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-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(사용검사 후 5년경과)
- 소요예산 : 500백만원
- 사업내용 :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
 -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
 -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
 - 수목 전지
 -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, 체육시설 보수
 - 자전거 보관대 설치, 옹벽 담장, 녹화시설 등

□ 추진계획

-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: '17. 4/4분기
- 현장실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: '18. 1/4분기
- 지원 단지 확정 및 사업 착수 : '18. 1/4분기
-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: '18. 2/4분기
- 보조금 정산 : '18. 3/4분기

□ 기대효과

-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행복한 삶터 주거 공간 조성
- 노후·불량한 시설물의 정비로 입주민 안전 및 편의 도모

②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

- ◇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·거주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대 상 : 중위소득 43%이하 및 부양의무자기준 충족하는 수급자
※ 주거급여 대상자 : 4,476가구 6,762명
- 지원내용
 - 【임차급여】
 - 내 용 : 임차가구,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
 - 사 업 비 : 임차급여 4,340백만원(국3,472, 도434, 시434)
 - 【수선유지급여】
 - 내 용 : 자가가구,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 주택개량 (경보수 350만원, 중보수 650만원, 대보수 950만원 이내)
 - 사 업 량 : 80여 가구
 -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국320, 도 40, 시 40)
 - 위탁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□ 추진계획

- 연간수선계획 확정 : '18. 1월
- 사업시행(수선유지 협약 체결 2월) : '18. 1 ~ 12월

□ 기대효과

-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현금 및 현물 지급으로 기초생활 보장, 자활능력 제고
-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

③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

- ◇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여건 조성,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
 - ◇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사회 양극화 해소 도모
-

□ 사업개요

- 지원 근거 : 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
- 융자지원금 : 20세대 / 600백만원
- 사업내용
 - 생계·의료·주거 수급자 중 우리시 계속 거주 3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에서 접수 선발
 - 세대 당 3천만원 이하의 융자금 지원
 - 지원기간 2년(자격유지 시 1회 연장 가능)
 - 이자 연 2%, 보증금 10%

□ 추진계획

- 세부시행계획 : '18. 1월
- 읍·면·동주민센터 통보 및 신청접수 : '18. 2~3월
- 신청대상자 자격확인 및 선정 : '18. 3월
- 선정대상자 통보 및 전세계약 : '18. 3월~
- 전세권 설정

□ 기대효과

-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부담 감소와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④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

- ◇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에 대한 비리근절로 입주민 민원 해소
 - ◇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대 상 : 의무관리 공동주택(140개 단지)
 - 300세대 이상
 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
 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
- 사업비 : 3백만원
- 사업내용
 - 대상선정
 - 입주자 3/10이상 연명으로 신청한 단지
 -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관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단지
 -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 단지(300세대 이상)
 - 점검내용 : 공사계약 및 최근 3년간 관리비 집행사항 등
 - 점검반 구성 : 공무원(2), 민간 전문가(4)

□ 기대효과

-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주택단지 내 입주민간 분쟁 예방
-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경각심 고취로 비리 사전 예방

⑤ 「재개발·재건축사업」 주민 궁금증 해소 행정서비스

- ◇ 재개발·재건축사업 희망지역에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로 주민 궁금증 해소
 - ◇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과 주민의 행복감 충족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계속
- 대 상 : 정비사업 희망지역
 - 단독주택 밀집지역(20년~30년 이상)
 - 공동주택단지 39개소 : '84년이전 3개소, '84년이후 36개소
 - 1984. 12. 31.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이상
 - 1985. 1. 1.~1993. 12. 31. 준공된 건축물은 21년+(준공연도-1985)
- 사업내용
 -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설명회 자료 작성
 -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궁금증 해소 설명회 개최

□ 추진계획

- 대상지역 홍보 및 설명회 자료 작성 : '18. 1~2월
- 주민설명회 개최 : '18. 3~12월

□ 기대효과

- 정비사업 궁금증 해소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발생 예방
- 재개발·재건축사업 원활한 추진 및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

신 규 사 업

1 공동주택 내 무인택배함 설치

- ◇ 소규모 가구형태의 급격한 증가와 택배사칭 범죄 발생 등에 대한 입주자 등의 불안감 해소
 - ◇ 택배 배송물량 급증 및 택배 화물 파손, 분실사고에 대한 분쟁 해소와 안전한 택배 수령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월부터
- 대 상 :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
- 사 업 비 : 없음(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 설치)
- 사업내용
 -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출입구 또는 동별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입주자 등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 설치
 - 세대수의 20%이상 택배함 설치
 - 설치비
 - 20구함 : 800만원, 30구함 : 1,200만원, 50구함 : 1,600만원 정도

□ 추진계획

- 2018.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 권장 적용

□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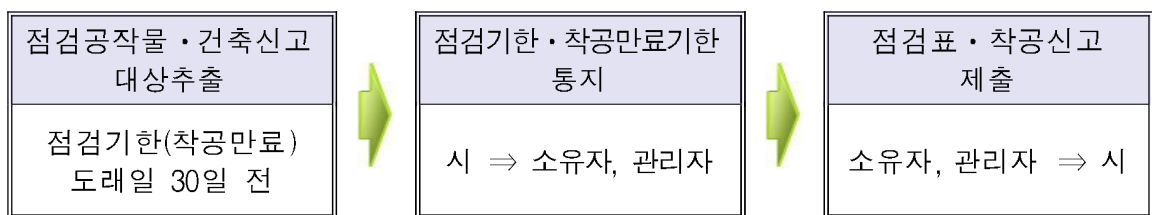
-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주택 입주 만족도 제고
- 여성·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칭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택배 수령

② 민원편익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

- ◇ 건축법령에 따라 유지·관리되는 공작물 및 건축신고에 대한 사전예고 행정서비스로 불이익처분 민원 사전예방
- ◇ 건축물 철거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사후점검 후 대장말소 행정 서비스로 재산세 부과 불이익 예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비 : 비예산사업
- 사업내용
 - 유지관리대상 공작물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 기한 전 사전예고
 - 3년마다 유지관리 안전점검 미 이행시 ⇒ 과태료 처분
 -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착공기한 만료 전 사전예고
 -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착공시 ⇒ 건축신고 효력 상실
 - 건축물 철거신고수리 후 사후점검에 따른 대장말소 조치
 - 건축물대장 말소 미 이행시 ⇒ 재산세 부과



□ 기대효과

- 공작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주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만족 건축행정을 구현